

# 신문기사에 나타난 새 가족법상 이혼판례 분석

-1996. 2. 12 ~ 1999. 1. 4, 조선일보와 국민일보-

Study of Divorce Cases Appeared in Newspapers, Chosunilbo and  
Kookminilbo under New Family Law(1996. 2. 12 ~ 1999. 1. 4)

경원전문대학 가정과  
부교수 신순자

Dept. of Home Economics, Kyungwon Junior College  
Associate Prof. : Shinn, Soon Ja

## ◀ 목 차 ▶

I. 서론	III. 결론
II. 이혼판례분석	참고문헌

## <Abstract>

This is a study of 43 divorce cases appeared in the Korean courts during 3 years period from Feb. 12, 1996 to Jan. 4, 1999.

They were divided into 6 categories.

- 1) 11 cases were those where divorces were not allowed.
- 2) 21 cases dealt with the right to ask for alimony.
- 3) 3 cases dealt with the right to ask for division of property.
- 4) 2 cases were to decide who will exercise parental rights with respect to children.
- 5) 1 case was to decide who can meet the children.
- 6) 5 other cases dealt with other problems associated with divorces.

### I. 서론

가족은 인간이 누구나 태어나면서 처음 경험하는 일차적 집단(primary group)으로서 공동사회(gemeinschaft)이다. 공동사회란 이익사회(gesellschaft)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구성원 상호간에 애정으로 연결되어 있어 외부의 장애에도 분열되지 않는 본

질적 결합 관계를 갖는 것으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여러가지 영향으로 인해 가족의 본질적 결합이 붕괴되어가고 있다. 현금에 와서는 1사람 부모만이 있는 가정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새가족법이란 199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가족법을 말하며 가족법이란

민법중 가족에 관한 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가족법은 민주주의 이념에 바탕을 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1989년 12월 19일에 개정되고 1991년 1월 1일부터 효력발생 시작한 새가족법으로 인하여 남녀차별조항이 많이 개정되었다.

새가족법은 이혼하는 여성에게 새가족법 이전에 없던 권한을 부여했으니 첫째는 재산분할청구권이고(민법 839조 2항: 배경숙, 1993: 412) 둘째는 자녀의 친권자 선임 즉 이혼시 자녀양육을 부부가 협의할 수 있는 것(민법 909조 4항 전단: 배경숙, 1993: 406) 셋째는 이혼후 자녀면접교섭권(민법 837조 2: 배경숙, 1993: 408)등이다. 새가족법 이전에는 첫째로 이혼하는 여성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어 남편의 선심에 호소하여 위자료를 받을 뿐이었다. 또 자녀의 친권은 아버지에게만 있었다. 그리고 자녀면접교섭권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이혼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자녀를 만날 수 있다는 법적 규정이 없어 몰래 만나 봐야 하는 고통이 따랐다.

위에 말한 세가지 권한중에 제일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재산분할청구권인데 이것은 경제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민법 839조 2항은 "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으로 인하여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에게도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항 하나만으로도 이미 우리나라의 여성은 이전에 없던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영미법(英美法)은 성문법이 아니고 판례에 의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대륙법의 영향을 받아 성문으로 법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위의 839조 2항에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사실상 그 「기여도」가 어떻게 해석되느냐 즉 각각의 판례에서 어떻게 판시되느냐가 매우 궁금하고 중요하다. 판사의 시각에 따를 수도 있고 이것은 전의 판례를 참고해서 내려지는 결정일 수도 있다. 새가족법에 따른 이혼에 대한 판례를 고찰함으로써 이혼 및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친권행사 및 양육자 지정청구, 자녀면접교섭권 등이 어

떻게 실제로 판례로 판시되었는가를 고찰하려는 것이 이 논문의 큰 목표이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혼에 직면하는 여성에게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색인(index)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이 논문의 실용적 목적이다.

본 연구자는 1996. 2. 12 부터 1999. 1. 4일까지 약 3년에 걸쳐 2개 신문(조간으로는 조선일보와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석간 국민일보)에 보도되는 판례를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신문에 보도되는 판례가 과연 1차적 자료를 제공할까 의구심이 늘어서 서울가정법원에 문의했더니 판례는 일반에게는 열람시키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례편찬과에 문의하여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하급심판결집 1997년 1권을 참고하게 되었다.

이 판결집은 일정기간 동안(이 경우 1997. 1. 1~1997. 6. 30) 각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서 한 판결 및 결정 중에서 선풍적 의미가 있거나 연구가치가 있는 사례, 전형적인 재판례 또는 하급심법원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는 사례등을 선정, 수록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가사」 부분에서는(pp.399-439) ○이혼 및 재산분할등 ○혼인 무효·이혼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 ○이혼등 ○이혼 및 친권자지정 ○이혼 ○호적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 등에 걸쳐 오직 판결 1개씩만 수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자가 1996. 2. 12 부터 1999. 1. 4 까지 약 3년 동안에 걸쳐 2개 신문에 기사로 실린 판례들을 하나씩 빠짐없이 수집하였던 것을 자료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판례 43개).

그러나 위에 말한 하급심판결집을 보아서 얻은 것은 신문에 나타난 것만 보면 부분만 볼 수 있었던 것에 비하여 전체를 볼 수 있었기에 본 연구 진행에 긍정적 효과를 주었다. 또한 신문에 나타난 판례도 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II. 이혼판례 분석

위에서 말한 43개의 이혼에 관련된 판례를 6가지

로 구분했는데 새가족법의 특징인 1) 이혼을 청구해서 이혼이 허락안된 경우 11개, 2) 이혼 및 위자료청구 21개, 3) 재산분할청구 3개, 4)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2개, 5) 자녀면접 교섭권 1개, 6) 이혼과 관련된 그 밖의 판례들로 구분해서 분석해 보려고 한다.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 외에도 이 판례들을 알기 쉽게 <표>로 설명해 보려고 한다.

1. 이혼을 청구해서 허락이 안된 판례의 분석

이혼을 청구했다 허락이 안된 판례는 총 11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에 있다. 그 판결들의 내용을 본다면 가정파탄의 책임자는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 불화가 있어도 장애인 남편을 보다 많은 사랑으로 돌

<표 1> 이혼청구해서 이혼이 허락안된 판례

1) 법원, 재판장, 판결일, 보도한 신문, 판결내용	대법원 특별1부, 주심 이임수 (1996. 3. 2, 조선일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복수의 감정을 갖고 이혼청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법원이 예외적으로 이혼을 인정할 수 있지만, 부인이 남편을 가정으로 돌아오게 할 생각에서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 불륜 당사자는 배우자의 고소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
2)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옥신판사 (1996. 4. 18, 국민일보) 결혼후 경제형편이 나빠진뒤 열등감에 시달린 남편이 부부싸움 끝에 손찌검등 구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장애인 배우자에게는 보다 많은 배려가 필요한 만큼 이를 사랑과 인내로써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부인의 이혼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옥신판사 (1996. 10. 24, 국민일보) 남편이 있는 몸으로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은 남편과의 신의를 저버린 정숙하지 못한 행동이며 남편 B씨가 A씨의 불륜을 의심해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하더라도 근본 원인은 A씨의 위도에 있는 만큼 A씨의 이혼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4)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승량판사 (1997. 6. 13, 국민일보) 대학원에 다니는 아내 전모씨가 학업을 이유로 가사를 소홀히 했으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정모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가정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은 대학원에 진학한 아내에게 있기보다는 아내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가사분담을 묵살하고 부부간 불화를 시부모에게 알리는 등 갈등을 심화시킨 남편측에 있다.
5)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 박준수 판사 (1997. 9. 6, 조선일보) A씨(여)와 B씨는 미국 유학중 결혼했다. 공부하느라 떨어져 살았고 크고 작은 감정적 대립이 많았다.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A씨(여)도 직장생활을 하느라 바쁘는데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토로했다. 결국 남편 B씨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법원은 「부부공동체는 신성한 것이라며 사소한 불화로 쉽게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고 이혼신청을 기각했다.
6)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 박준수 판사 (1997. 9. 12, 조선일보) B씨(여)는 아들을 2명 두었는데 큰 아들은 모범생이고, 둘째는 소년범으로 법원에 들락거리는 등 말썽을 피우다가 A씨(남)가 집을 나가라고 하자 집을 나갔고 어머니 B씨도 뒤따라 나가 방을 얻어 아들과 살게된지 2년 가까이 되자 A씨(남편)가 「일반적으로 배우자를 돌보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 그러나 재판부는 「부인이 남편과 자식을 돌보지 않기 위해 가출한 것(악의적인 배우자 유기)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7) 판결	서울가정법원 항소부, 박준수 부장판사 (1998. 2. 3, 국민일보) 전자제품가게와 의류가게등을 운영하던 남편이 사업에 실패, 근 20년동안 생활비조차 제대로 갖다주지 못하자 파출부와 상점 점원으로 나서기도 한 아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이혼소송을 냈으나 「불가피한 경제적 곤란」은 이혼사유가 안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8)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 이재곤부장판사 (1998. 6. 18, 국민일보) 여러차례 직장을 옮겨다니고 사업에도 실패해 생활비를 제대로 벌어오지 못했다며 S씨(여)가 남편 K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K씨가 잦은 전직과 사업실패로 생활비도 제대로 벌지 못해 처가로부터 생활비와 사업 자금등을 지원받았고 이 때문에 아내와 여러차례 갈등을 빚다 별거중인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부부 싸움의 대부분이 경제문제로 발생했고 K씨가 아내에게 폭언, 폭행등 부당한 대우를 하지는 않았던 만큼 이혼에 앞서 사랑과 이해로 부부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9) 판결	대법원 민사1부, 주심 이임수 (1998. 7. 20, 조선일보)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92년초부터 집을 나와 아들의 집에서 산 것은 A씨가 술을 마시고 자주 폭행한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A씨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10)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 김선중 판사 (1998. 9. 11, 조선일보) 57년 사채업자인 남편(90)과 재혼한 A(70)씨는 결혼초부터 외출도 제대로 못했을 만큼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남편은 A씨를 대전의 아들(39) 집으로 내쫓았다. 남편에 분개한 A씨는 95년 이혼소송을 냈지만 남편의 사과를 받아들여 화해했었다. 그 후에도 별거를 계속했던 노부부는 남편이 재산 대부분인 30여억원을 일언반구도 상의없이 대학에 기부하자, 서운함을 삭이지 못한 A씨가 이혼과 20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두 사람이 극도의 갈등 상태에 있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 한 만큼 해로했으면 한다」
11) 판결	서울고법 민사10부, 박인호 부장판사 (1999. 1. 4, 국민일보, 조선일보) 할머니 A씨(75)가 할아버지 B씨(83)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워 경제권을 쥔 채 생활비를 적게 주는 등 경제적으로 원고를 어렵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결혼 당시 기준을 감안할때 이는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6년 결혼했으나 B씨가 경제권을 가진 채 극히 적은 생활비로 살림을 꾸려왔으며 고령이 된 후에도 불륜사실이 있다고 우기고 돈 문제로 다투다 고소까지 하자 지난 97년 이혼소송을 냈었다.

※ 이혼을 청구했다가 허락이 안된 경우가 11개인데 그 중에서 남편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5개, 아내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6개이다.

박야 한다는 판결. 근본 원인이 부인의 외도에 있는 경우 남편의 폭행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 학업을 하는 아내가 가사를 소홀히 한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 혼수등 사소한 이유로 소송하지 말라는 판결(박사 부부에게), 부인이 가출을 했어도 그 이유가 남편의 편애에 의한 아들의 가출인 경우 이혼이 허락 안된다는 판결, 오랫동안 생활비를 못 줬어도 불가피한 경제적 곤란인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안된다는 판결, 남편이 사업실패와 전직 등으로 처가에 신세를 진 경우에 이혼에 앞서 사랑과 이해로 부부갈등을 극복하라는 판결, 혼인 생활을 먼저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70세 아내 90세 남편 갈등 쟁고 해로하라는 판결 등이다.

(해석) 이 판례들은 대체로 경제적 이유, 신체적 장애, 부부간의 이해부족으로 오는 갈등을 쟁고 화해하라는 요지에서 이혼을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서 당연히 부부간의 결혼이 보다 높은 차원을 위해서 지향해야할 방향을 제시해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 이혼 및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례의 분석

이혼 및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례는 총 21건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남편의 성적장애로 인한

경우 이혼이 허락되고 남편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 약혼후 동거단계에서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남자쪽에서 받을 수 있다는 판결, 재혼한 여자의 새남편은 그 여자의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전 남편에게 해주어야 한다는 판결, 간통은 아니더라도 부부가 정조의무를 위배한 것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남편에게), 직장생활을 하며 시어머니를 모시는 주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낸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뚜렷한 이유가 없이 아내가 남편에게 성관계를 거부했을 경우 아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한 경우 아내의 정부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 부부간의 정조를 어겼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남편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안해도 의심받을 행동을 한 남편은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외간남자와 만나고 숨겨와 이혼하게 된 아내는 위자료를 못받는다는 판결. 마마보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은 허락이 되고 마마보이 남편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 대리모의 경우 복잡한 관계로 피해를 받게 된 대리모에게 애 아빠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등이 있다. 반찬거리에 쓰는 비용까지 시시콜콜 간섭하는 남편 때문에 바람난 아내에 대해서 근본 책임은 남편에게 있고 위자료 지급하라는 판결. 시부모를 무시하는 며느리는 남편의 폭행으로 이혼하게 되더라도 남편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 결혼식은 올리고 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불륜과 폭행을 이유로 맞소송한 경우 불륜이 폭행보다 나쁘기 때문에 여자 당사자와 직장상사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액취증 가진 아내가 수술도 하고 애기도 임신했으나 낙태를 강요하고 이미 태어난 아들에게도 출생신고를 해주지 않아 이혼소송을 낸 경우 이혼하고 위자료 받는 판결(남편에게서). 아내를 때려 디스크 걸린 아내에게 의사의 권유로 부부관계를 피하는 아내에게 관계요구하고 또 때린 경우 이혼판결하고 남편이 위자료를 물어 주라는 판결. 장애아를 출산한 아내에게 아내탓으로 돌리고 새로이 아이를 갖자고 제안한 아내에게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가정을 등한시한 경우 아내가 소송해서 이혼이 성립되고 남편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시부모의 지나친 부부생활 간섭으로 불화가 생겨 가정이 파탄된 경우 남편은 물론 시부모도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첩도 본처에 위자료 줘야 된다는 판결. 약혼관계인 예비부부도 상대방에 대한 순결의무를 어겼다면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사람이 남편이 피해보상금을 가로채고 다른 여자와 동거하자 언니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이혼소송을 냈는데 이혼을 허락하고 남편이 위자료 지급하라는 판결등이 있다.

(해석) 불륜이나 간통은 아니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배해서 이혼한 경우 불륜한 배우자의 상대방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4개나 있는데 이것은 불륜과 간통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판결이다. 사실혼에서도 마찬가지로 판결이 있었고, 약혼관계에 있어서도 순결의무를 어긴 자에게 위자료 배상판결이 있는것도 같은 취지에서이다.

고부간의 갈등문제에 있어서는 시어머니를 무시한 며느리가 남편의 폭행이 있더라도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도 있지만 직장생활을 하며 시어머니를 모시는 주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낸 남편이나, 시부모의 지나친 부부생활 간섭으로 가정이 파탄난 경우 남편과 시부모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함으로서 직장을 갖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시부모를 모셔야 하는 많은 아내들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동정심을 보이는 진보적 견해의 판결이다.

### 3. 재산분할권과 관련된 판례의 분석

배우자가 장차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즉 부인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퇴직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50% 인정한 판례. 부부가 이혼전부터 별거했다면 재산을 분할할때 이혼시점이 아닌 별거시점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 과다혼수를 요구한 의대생은 위자료 및 재산

〈표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

1) 법원, 재판장, 판결일, 보도한 신문, 판결내용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 김능환 부장판사 (1996. 5. 11, 조선일보) 사업을 하는 B씨와 결혼식을 올린 A씨는 신혼 첫날밤부터 정상적인 성관계를 맺지 못하다가 뒤늦게 남편이 결혼 직전에 생긴 많은 빚을 걱정할 나머지 「십인성 발기부진증」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친정집과 상의해 보약을 지어주는 등 노력했으나 남편이 이를 계속 거부해 한달만에 별거에 들어가게 되자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위자료 4천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2)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 박준수 부장판사 (1996. 7. 6, 국민일보) 남자 박모씨가 약혼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3)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 26부, 김정술 부장판사 (1996. 7. 19, 국민일보) 신모씨가 자신의 부인과 불륜관계였던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는 신씨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4)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 김승환 (1996. 10. 5, 조선일보) A씨가 남편 및 남편과 교체하던 애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A씨와 남편은 이혼하고, 남편과 애인은 A씨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5)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영혜 판사 (1996. 11. 1, 조선일보) 중매로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던 K모씨가 법원에 사실혼관계 해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첫날밤 부터 「퇴짜」를 놓고, 각방 쓰기가 한달여 동안 지속됐고, 부인의 가출도 잦았다. 담당 재판부는 K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6) 판결	청주지방법원 가사부, 이형하 부장판사 (1996. 11. 10, 국민일보) 이모씨가 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7)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 김능환 부장판사 (1996. 11. 19, 국민일보) D여대에 시간강사였던 A씨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B씨와 결혼했으나 며느리의 직장생활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시어머니는 집안일에 소홀하다고 A씨를 구박하고, 남편은 시어머니와 충돌이 잦은 A씨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A씨는 어려운 시집살이와 원만치 않은 부부생활에 회의를 느껴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다. A씨는 친정에 있으면서 임신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으나 시어머니와 남편은 반가운 기색은 없고 오히려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임신중절 수술을 하고 남편과 합의이혼했다. 그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8)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영혜 판사 (1996. 11. 23, 조선일보, 국민일보) 남편이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잠꼬대를 해 부부간에 불화가 생겼으며 이모씨가 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이혼하되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9)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 (1996. 12. 21, 국민일보) A씨가 전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89년 결혼한 A씨는 1995년 둘째아들을 데리고 외출했다 돌아와 행적을 묻는 남편에게 “초등학교 동창생과 저녁식사를 했으나 이름은 말해줄 수 없다고 버티다 남편으로부터 「둘째가 정말 내 아들이냐」는 폭언을 듣고 가정불화를 겪어 오다가 같은해 5월 이혼했다.
10) 판결	1997. 1. 7, 조선일보 송영탁씨(가명)와 사실혼관계인 이영화씨(가명)는 남편 송씨가 부부 사이의 시시콜콜한 일조차 부모에게 고자질하는 것이 못마땅해 부부싸움과 별거를 거쳐 마침내 지난해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주된 책임은 갈등을 증폭시킨 남편에게 있다며 2천만원의 위자료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원소 승소판결을 냈다.

11) 판결	<p>서울가정법원 가사1부, 박준수 판사 (1997. 1. 22, 조선일보, 국민일보)                  A씨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시누이 부부의 부탁으로 인공수정을 통해 대리출산했다가 자기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한 A씨가 자신과 재혼한 시누이의 전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씨는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p>
12) 판결	<p>서울가정법원 가사1부, 박준수 판사 (1997. 4. 3, 국민일보)                  같은 회사 상사인 B씨와 결혼한 A씨는 남편이 시장에서 찬거리를 사는등의 사소한 금전지출 등 전업주부가 해야할 모든 일에 시시콜콜 따지고 들었다. 남편의 간섭으로 가사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 A씨는 서적의관원을 했고 아들의 가정교사에게 호감을 느껴 서로 [애정표현]을 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것을 목격한 남편은 격분하여 폭행을 했고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남편의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한 것은 인정되나 남편 B씨가 가정의 사소한 금전지출까지 간섭한 것은 아내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라며 아내가 배우자로서의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고 소외감을 갖도록 한 만큼 남편에게 보다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p>
13) 판결	<p>서울가정법원 가사3부, 김진권 부장판사 (1997. 4. 12, 국민일보)                  안부전화도 거의 하지 않는등 시부모를 무시하는 행동이 습관화 된 아내는 남편의 폭행으로 이혼하게 되었다라도 남편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p>
14) 판결	<p>대구고법 가사1부, 이선우 부장판사 (1997. 7. 3, 국민일보)                  A씨와 B씨는 지난 95년 5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않은채 2개월 동안 동거하다가 헤어진 뒤 서로 불륜과 폭행 때문에 사실혼관계가 깨어졌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맞소송에서 재판부가 불륜 책임이 더 크다고 판결했다. B씨와 B씨의 직장상사 C씨는 A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p>
15) 판결	<p>서울가정법원 가사2부, 박희수 판사 (1997. 9. 20, 조선일보, 국민일보)                  아내의 액취증(겨드랑이 냄새) 때문에 불화가 생겨 남편 L모와 아내 K모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L씨와 K씨는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씨는 93년 L씨를 중매로 만나 결혼한뒤 남편이 음식에서도 냄새가 난다며 트집을 잡아 괴롭히자 액취증 제거수술을 받고 증세가 호전됐으나 이번에는 시집식구들까지 가세해 액취증이 유전된다며 임신 7개월 상태인데도 낙태를 강요하고 95년 태어난 아들에 대해 액취증 유전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며 출생신고도 해주지 않자 지난 1월 이혼소송을 냈다.</p>
16) 판결	<p>서울지법 가사3부, 김진권 부장판사 (1997. 10. 11, 국민일보)                  아내를 폭행, 척추 디스크에 걸리게 한 남편이 의사의 권유로 부부관계를 피하는 아내를 또 때리는등 폭행과 폭언을 일삼다 위자료 3천만원을 물어주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p>
17) 판결	<p>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2부, 박희수 부장판사 (1997. 11. 10, 국민일보)                  박모씨가 장애아 출산의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기며 부부관계를 거부한 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등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박씨와 이혼하고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박씨가 92년 임신중독증으로 첫 아이를 잃은뒤 94년 임신 7개월만에 딸을 낳았으나 이번에는 조산으로 뇌성마비증세를 보이자 딸의 장애를 아내 탓으로 돌리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박씨는 정상아를 출산하면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리라 생각하고 아이를 갖자고 제안했지만 남편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가정을 등한시하자 소송을 냈다.</p>
18) 판결	<p>서울고법 민사4부, 박영무 판사 (1998. 6. 13, 조선일보)                  P씨(여)가 남편 K씨와 시아버지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두 사람은 이혼하고 K씨와 시아버지는 연대해서 위자료 1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95년 대학생이던 남편과 결혼한 P씨는 직장생활로 돈벌이를 하며 시부모로부터 남편 학비 등 명목으로 매달 60만원씩 받아왔다. 이를 계기로 시부모는 부부의 외식 횡수등 시시콜콜한 부분에도 간섭했고 생활비 지출내역 제출까지 요구했다.</p>

19) 판결	대법원 민사3부, 주심 지창권 (1998. 4. 17, 조선일보) 유모씨가 남편 박모씨와 첩 신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첩관계를 맺는다는 계약은 원천적인 위법행위이므로 남편은 물론 첩 신씨도 본처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 판결	서울지법 민사25부, 이성룡 부장판사 (1998. 7. 6, 국민일보) 최모씨(여)가 약혼자 조모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조씨는 약혼녀 최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와 최씨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또 사실혼 관계까지도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혼한 상태에서 조씨가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성실신의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21) 판결	서울고법 민사9부, 우의형 판사 (1998. 12. 24, 조선일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A씨가 언니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을 받아들여 「남편은 A씨와 이혼하고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74년 결혼한 A씨는 91년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고,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을 가로챈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자 95년 소송을 냈다.

※ 위자료청구소송이 21개인데 본 연구자의 “새가족법에 따른 이혼판례에 대한 고찰” 논문(1991. 5~1995. 11)에서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이 10개였고 전업주부도 기여도를 50~30% 인정했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뜻이 다르다. 그리고 위자료 액수도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다.

〈표 3〉 재산분할청구와 관련된 판례

1) 법원, 재판장, 판결일, 보도한 신문, 판결내용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 이태운 부장 판사 (1996. 2. 12, 국민일보) 피고는 장차 받을 예상퇴직금 5천만원을 포함한 9천여만원의 재산중 4천5백만원을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
2)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 김능환 부장 판사 (1996. 4. 30, 국민일보, 조선일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부부생활을 유지하며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판단되는 만큼 부부가 별거생활에 들어간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3) 판결  해석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 이재곤 판사 (1998. 5. 21, 조선일보) 시댁의 금품 요구 등으로 결혼생활이 불가능하다며 A씨(여)가 남편 B씨와 시부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 대해 두 사람은 이혼하고 피고측은 1억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9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과다환수 요구 의대생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9천만원 지급 판결 ※ 아내가 소송제기

분할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4.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청구와 관련된 판례

부부관계가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법 804조의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6호)라는 조항을 확대

해석해서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되며 아내가 소송제기하여 친권은 아내(어머니)에게 준 판례가 나왔다. 매 맞는 남편이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아내가 폭력을 사용하므로 남편이 아내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이 허락되고 친권을 남편(아버지)에게 허락한 판례도 있다.



<표 4>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청구와 관련된 판례

<p>1) 법원, 재판장, 판결일, 보도한 신문, 판결내용</p>	<p>서울가정법원 (1996. 4. 18. 조선일보) A씨와 B씨가 결혼했다. A씨의 사업이 어려워져 생활비에 쪼들리고, 신혼살림집에서 쫓겨났고, B씨와 친정식구들이 A씨의 채무중 일부를 부담하는등 노력을 했지만 빚독촉에 시달려 경제 사정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B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냈다. 원고 B씨의 승소 판결이 나왔다. 남편이 단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첫 판례가 나온 것이다.</p>
<p>2) 판결</p>	<p>서울지법 가사3단독, 조용연 판사 (1996. 8. 30. 국민일보) C씨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폭행을 일삼으며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 P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양측은 이혼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고 남편의 두 자녀 양육권을 인정했다. C씨는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았다.</p>

\* 친권은 한 경우에는 아내(어머니)에게, 다른 하나의 경우에는 남편(아버지)에게로 갔다.

<표 5> 자녀면접 교섭권

<p>1) 법원, 재판장, 판결일, 보도한 신문, 판결</p>	<p>서울가정법원 가사항고부 박준수 부장 판사 (1997. 7. 14. 국민일보) 이혼녀 A씨가 전남편 B씨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권 등 청구사건 항고심에서 방학때 한달씩, 평소에는 주일에 한번씩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원심을 깨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이들이 새어머니와 가정에 잘 적응하고 있는 만큼 친모는 아이들을 만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p>
------------------------------------	--

\* 자녀면접교섭 경우는 하나인데 이혼한 생모가 패소했다.

5. 자녀면접교섭권과 관련된 판례

이혼녀가 전남편을 상대로 낸 면접교섭권 청구사건에서 정든 새엄마가 애들에게 중요하므로 이혼한 생모의 면접교섭권 청구를 기각한 판례가 나왔다.

이므로 신부의 부모가 보태준 전세보증금은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 해도 빌려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이혼한 남자가 이혼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지속했다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사망한 전 부인의 보상지급을 정지시켰다가 보상금 일부를 조절결정을 통해 받게 된 것 등이 있다.

6. 이혼과 관련된 그밖의 판례들(총5개)

국내취업을 원하는 중국교포여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장결혼을 해준 경우에, 다른 목적을 가진 혼인이라도 혼인신고 자체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국내혼인제도하에서 유효하다는 판결. 사실혼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 남편이 잦은 경마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행위는 가족을 악의적으로 저버리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한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 신부는 혼수를 신랑은 집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혼례관행

III. 결론

본 연구에서 분류 지정한 바와 같이 3년 기간 동안에 가장 큰 변화는 우리나라가 국가부도 위기에 처하여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것이다. 그 결과는 혹독하여 1년동안 300만명이 넘는 사람이 기업퇴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실직자가 되었다. 서울 광진구청 조사에 따르면 97년 상반기와 IMF 이후의 이혼건수를 비교한 결과 IMF 체제 이후 이혼율이 39.4%나 급증했으며 전체 이혼율 역시 전년대비

〈표 6〉 이혼과 관련된 그밖의 판례(총5개)

1) 법원, 재판장, 판결일, 보도한 신문, 판결	서울지법 형사7부, 정덕홍 판사 (1996. 9. 15, 조선일보) 국내취업을 원하는 중국교포 여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장 결혼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6월과 4월을 선고받은 양모, 김모 피고인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조용연 판사 (1996. 2. 23, 국민일보) 조모씨가 허모씨(여)를 상대로 낸 혼인부효소송에서 허씨의 혼인신고는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사실혼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 신고를 한 것은 무효다.
3)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최성진 판사 (1996. 12. 29, 조선일보) 가정주부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라고 판결B씨가 잦은 경마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행위는 가족을 악의적으로 저버리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한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4) 판결	서울지법 민사1단독, 이홍철 판사 (1997. 8. 29, 국민일보) 김모씨가 딸과 이혼한 사위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이씨는 김씨에게 빌린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부는 혼수를, 신랑은 집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혼례관행이므로 신부의 부모가 보태준 전세보증금은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 해도 빌려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5) 판결	서울지법 조정전담재판부 민사92단독, 김한용 판사 (1997. 12. 8, 국민일보) 88년 부인 김모씨와 이혼한 장모씨는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김씨가 사망하자 「이혼후에도 사고발생 전까지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지속했다」며 2년여동안 보상금 지급을 정지시키고 김씨 유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끝에 조정결정을 통해 3천4백여만원을 받게 됐다. 이혼후도 사실혼관계 유지 삼풍보상금 일부지급 결정

16.9%나 증가했다.(국민일보, 1998. 12. 19, p.25) 전체 이혼의 10%는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다 헤어지는 '황혼이혼'으로 집계됐다.(국민일보, 1998. 7. 2.) IMF 이후에 발생한 이혼 즉 1997년 11월 중반 이후에 나타난 이혼판례도 여기에 취급된 43개의 판례 중 15개나 된다.

본 결론에서는 3년동안 모은 43개의 판례들이 시사하는바가 무엇인지 즉 가족법상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보려고 한다.

### 1. 이혼청구해서 이혼이 허락안된 것

- 1)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한 가정파탄의 책임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 2) 장애인 남편은 보다 많은 사랑이 필요한 만큼 불화있어도 이혼을 허락할 수 없다.
- 3) 부인이 다른 남자와 애인관계를 유지하다 남편

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더라도 근본원인은 부인의 외도에 있는 만큼 이혼사유가 되지 못한다.

- 4) 학업이유로 아내 가사소홀 이혼사유 안된다.
- 5) 「혼수」등 갈등 부부박사 이혼소... 법원 "사소한 일" 기각
- 6) 남편의 편애로 차남가출, 따라간 부인 이혼사유 안된다.
- 7) 20년 동안 생활비를 못줬어도 불가피한 사유땀 이혼안된다.
- 8) 남편 전직, 사업실패로 처가에 신세, 폭언, 폭행 등 없었으면 이혼사유 안된다.
- 9) 이혼사유가 쌍방에게 있더라도 혼인생활을 먼저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10) 70세 아내 90세 남편에 이혼소송, 법원 "갈등sett고 해로하세요"

- 11) 가부장적 순종 강요 이혼 사유 안된다. 법원 “당시 가치기준 감안” 70대 할머니의 소송 기각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것**

- 1)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남편의 성적 장애로 결혼식후 한번도 정상적 부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한달만에 결혼생활이 파경에 이른 경우 남편의 배상책임이 있다.
- 2) 약혼후 동거단계에서 여자가 시부모의 출산중용에 반발, 일방적으로 결별을 선언한다면 남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 그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 3) 불륜끝에 재혼한 여자의 새남편은 전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 4) 간통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않은채 다른 이성과 교제했다면 부부가 정조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 5) 뚜렷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해 파혼에 이르게 한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 6) 아내의 불륜이 이혼의 직접원인이 되었다면 정부도 이혼한 남편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 7) 직장생활을 하며 시어머니를 모시는 신세대주부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고 가정에 불충실하다며 이혼을 요구한 남편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8) 의심받을 행동을 한 남편이 적극적인 해명노력을 하지 않은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부부간의 정조를 어겼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만큼 위자료는 줄 필요가 없다.
- 9) 외간남자 만나고 남편에게 숨겨 이혼원인 아내 위자료 못받는다.
- 10) 「마마보이」, 엄마의 지극정성 덕분에 일류학교에 일류직장을 갖춘 번듯한 신랑감일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실상 이들은 작은 결정조차 혼자 내리지 못해 결혼상대자를 당혹시키는가 하면, 결혼후에도 파경을 맞는 경우가 허다하다.
- 11) 시누이 부부를 위해 대리모 되었다가 남편과 같

- 등, 이혼. 애아빠인 시누이 남편과 재혼 또 헤어져. 불행한 대리모에 위자료 줄 것.
- 12) 찬거리 구입 지출까지 시시콜콜 간섭해서 실망한 아내 바람, 남편에 근본 책임. 위자료 2천만원 줄 것.
- 13) 안부전화 않는 등 홀대책임. 남편 폭행은 근본 이유 못됨. 「시부모 무시 이혼」 남편에게 위자료 줄 것.
- 14) 불륜이 폭행보다 나쁘니 결혼 파탄 위자료 천만원
- 15) 애취중 아내 상습구박 남편 이혼 위자료 3천만원 판결
- 16) 남편 폭행 디스크 걸린 아내 관계 요구 또 때려 이혼판결
- 17) 장애아 출산 아내 구박. 위자료 천만원 지급 판결
- 18) 시부모의 지나친 부부생활 간섭으로 불화가 생겨 가정이 파탄된 경우. 남편은 물론 시부모도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 19) 첩도 본처에 위자료 줄 것.
- 20) 약혼관계인 예비부부도 상대방에 대한 순결의무를 어겼다면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
- 21) 의식을 잃어 식물인간이 된 사람도 대리인을 통해 이혼소송을 낼 수 있다.

**3. 재산권분할청구에 관한 것**

- 1) 배우자가 장차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부인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퇴직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재산 형성에의 기여도를 50% 인정한 것이다.)
- 2) 부부가 이혼 전부터 별거했다면 재산을 분할할 때 이혼시점이 아닌 별거시점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3) 과다혼수 요구 의대생 위자료 1억원 및 재산분할금을 지불할 것

**4.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 1) 부부관계가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기 때

문에 민법 840조의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6호)라는 조항을 확대 해석해서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되며, 아내가 소송제기하여 친권을 아내(어머니)에게 준 판례가 나왔다.

- 2) 매맞는 남편이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아내가 폭력을 사용하므로 남편이 아내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이 허락되고 친권은 남편(아버지)에게 허락한 판례가 나왔다.

## 5. 자녀 면접 교섭권에 관한 것

- 1) 이혼녀가 전 남편을 상대로 낸 면접교섭권 청구 사건에서 정든 새엄마가 애들에게 중요하므로 이혼한 생모의 면접교섭권 청구를 기각했다.

## 6. 이혼과 관련된 그 밖의 판례들

- 1) 다른 목적을 가진 혼인이라도 혼인신고 자체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국내 혼인제도하에서 유효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 2) 사실혼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은 무효다.
- 3) 남편이 짚은 경마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행위는 가족을 악의적으로 저버리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한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4) 신부는 혼수를 신랑은 집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혼례관행이므로 신부의 부모가 보태준 전세보증금은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 해도 빌려준 것으로 봐야 한다.
- 5) 이혼후도 사실혼관계유지 삼풍보상금 일부 지급 결정

이상의 43개 판례를 분석한 결과, 신문에 기재된 이혼판례 기사도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하급심판례집에 실리는 것은 판결이 있는지 빠르면 1년 늦으면 1년반후에 나오기 때문에, 일찍 접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혼판례에 대한 연구로서는 이태영 박사의 학위논문인 한국이혼제도연구(1968)가 있다. 그러나 새가족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1991. 1. 1) 이혼판례에 대한 논문은 본 연구자의 "새가족법에 따른 이혼판례에 대한 고찰"(대한가정학회지 34권 2호, 1996)이 있다. 새가족법에 따른 이혼판례를 알려면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되나 이것은 열람이 허락안되고 있다. 이런 고충을 덜어줄 하나의 안내(index)로서 이 논문을 써본 것이다. 새가족법은 확실히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가족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혼을 허락하지 않은 판례들은 대체로 경제적 이유, 신체적 장애, 부부간의 이해부족으로 오는 갈등을 씻고 화해하라는 요지에서 이혼을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서 마땅히 부부간의 결혼이 보다 높은 차원에서 지향해야할 방향을 제시해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불륜이나 간통은 아니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배해서 이혼한 경우 불륜한 배우자의 상대방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4개나 있었는데 이것은 불륜과 간통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판결이다. 사실혼에서도 마찬가지로 판결이 있었고, 약혼관계에 있어서도 순결의무를 어긴 자에게 위자료 배상판결이 있는것도 같은 취지에서이다.

고부간의 갈등문제에 있어서는 시어머니를 무시한 며느리가 남편의 폭행이 있더라도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도 있지만 직장생활을 하며 시어머니를 모시는 주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낸 남편이나, 시부모의 지나친 부부생활 간섭으로 가정이 파탄난 경우 남편과 시부모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함으로서 직장을 갖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시부모를 모셔야 하는 많은 아내들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동정심을 보이는 진보적 견해의 판결이었다.

가족법에 의거한 위자료청구소송은 손해배상소송으로서 근본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과 다르다. 그리고 위자료 액수도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등으로 적으나 재산분할청구권은 그보다 훨씬 높은 액수의 재산을 분할할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 포

합된(자료를 제공한) 판례에는 위자료청구에 관한 것이 21개나 되고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것은 3개 밖에 실리지 않았다. 새가족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지 6-8년이 지나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중요성이 사람들의 머리에서 적어져가고 있는 것인지 또는 대량 실직자를 만들어낸 IMF 경제체제 때문에 내뱉어야 하는 여성들이 재산분할청구권까지 주장하지 못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판결 건수는 적으나 팔목할만한 판시가 있었으니 즉 장차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 이것은 부인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퇴직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재산형성예의 기여도를 50%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부가 이혼전에 별거상태에 있었다면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해서 분할해야 한다는 판례와 의대생과 결혼한 여성에게 과다혼수를 요구하여 문제가 생겨 이혼소송을 낸 경우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둘 다 지불하라는 판결등도 있었다.

친권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아내(어머니)에게로, 또 폭력을 사용하는 아내는 친권을 가질 수 없고 남편(아버지)에게 지정한 판례등도 있다. 자녀면접 교섭권에는 판례가 하나 뿐인데 이혼한 생모가 패소했다.

이상의 43개 판례를 분석한 결과 신문에 기재된 이혼판례 기사도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급심판례집에 실리는 것은 판결이 있는 지 빠르면 1년 늦으면 1년반 후에 나오기 때문에 일찍 접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이 논문이 이혼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색인(index)으로서 실용성 있는 자료로 될 수 있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본다.

### ■ 참고문헌

- 1) 김주수, 민법학 개론, 삼영사, 1991
- 2) 김주수, 이희배 공저, 가족관계학, 학연사, 1986

- 3) 김재은, 한국가족의 심리, 이화여대 출판부, 1981
- 4) 배경숙, 여성과 법률, 박영사, 1993
- 5) 서병숙, 결혼과 가정, 교문사, 1994
- 6)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통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 7) 신순자, "새가족법에 따른 이혼판례에 대한 고찰(1991. 5~1995. 11)",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2호, 1996
- 8) 유영주, 신가족관계학, 교문사, 1991
- 9) 유영주, "한국가족의 대내적 기능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10) 윤후정, 신인령 공저, 법여성학, 이화여대 출판부, 1991
- 11) 이광병, 현대 여성과 법률, 범경출판사, 1991
- 12) 이태영, 한국 이혼제도 연구, 이화여대 출판부, 1968
- 13) 이효재, 가족과 사회, 경문사, 1983
- 14) 장명옥, 가정학 원론, 교문사, 1981
- 15) 최신태, 결혼과 가족, 이화여대 출판부, 1981
- 16) 최재석, 한국 가족 제도사 연구, 일지사, 1983
- 17) 채옥희, 신 가정학 원론, 경춘사, 1994
- 18) 채옥희, 송순, 흥달아기 공저, 현대 사회와 가정, 경춘사, 1995
- 19) 하급심판결집, 1997년 1권, 법원도서관, 1998. 4
- 20) 허영민, 일반법학개론, 박영사, 1991
- 21) Deacon, R.E. and Firebough, F.Y., Family Resource Management, Allyn and Bacon Inc., 1988
- 22) Duvall, E.R.M.,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J.B. Lippincot Co., 5<sup>th</sup>ed., 1977
- 23) East, Marjorie, Home Economics, Allyn and Bacon Inc., 1980
- 24) Kirkpatrick, C., The Family as Process and Institution, The Ronald Press Co., 1963
- 25) Nimcoff, M.F., Comparative Family System, Houghton Mifflin Co., 1965
- 26) Sussman, Marvin B., Source Book in Marriage and the Family, Houghton Mifflin Co., 1974